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나24253 판결 [구상금청구소송]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1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가소187413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2022.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2021. 7. 1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이 유

1. 이의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늦어도 2019. 9. 10.경 원고가 제기한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9차5125)1)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지급명령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21. 7. 16.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2008. 12. 30.부터 2010. 2. 28.까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사실, 원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전91958호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피고에 대한 2009. 12. 8.자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09. 12. 14. 원고가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피고의 송달주소로 기재한 ‘화성시 C아파트 D호’로 송달되었고 피고의 어머니인 E가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가 2021. 7. 16. 위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거소로 실시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수소법원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거소로 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며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0009 판결 등 참조), 판결정본의 송달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소송행위의 추완 문제는 나올 수 없고, 당사자는 언제라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피고가 판결선고의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판결송달이 없는 한 그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15 판결, 1971. 6. 22. 선고 71다771 판결,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당시 위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종전 주소지로 실시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어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이상 불변기간인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진행될 수 없어 이의신청의 추완이라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피고가 나중에 지급명령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송달이 없는 한 그 이의신청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며,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 1.경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피보증인 피고,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보험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G)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피보증인인 피고가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무팀장으로서 소송 및 관련 공탁금 출급회수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그 직위를 이용하여 ① 2007. 4. 13.경 소외 회사로부터 화성시 H아파트 I호를 임차한 J에 대한 임차보증금 23,446,319원, 위 아파트 K호를 임차한 L에 대한 임차보증금 29,342,17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② 2007. 11. 13.경 소외 회사 소유인 화성시 M아파트, 화성시 H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 관련 비용의 선급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소되어 2009. 10. 29. 수원고등법원[2009노1799, 2009노4538(병합)]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소외 회사는 2009. 9. 4.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9. 11. 20. 소외 회사에게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15,000,000원의 한도에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 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보상심사서(갑 제5호증)의 보험심사 의견에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2007. 4. 13. 횡령'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때인 2009. 9. 4.은 위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간과한 채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피고의 마지막 불법행위가 2007. 11. 13.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회사는 보험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9. 9. 4.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2)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 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1.(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송주희, 판사 박애경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2019. 8. 19. 부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10. 이의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어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으로 이송되었으며(2020가소2678호), 위 법원은 2020. 6. 18.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2009. 12.

14.까지는 연 5%의, 2009. 12.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나75453호) 진행 중에 있다.

2) 보험금청구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사고발생일을 '2007. 11. 13.'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